

## 대전보건대학교 교육시설 및 기자재 심의운영위원회 규정

2000. 03. 01. 최초제정      2025. 10. 01. 부분개정  
2003. 06. 27. 전면개정  
2011. 07. 19. 전면개정  
2012. 08. 01. 부분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에서 구매하는 개당 취득단가가 미화 5,000\$이상, 취득가격이 미화 50,000\$이상인 실험·실습 및 사무용 기기, 장비(이하 “기자재”라 한다), 공사예정금액 500만 원 이상 등을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, 예산절감 및 대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자재구매선정 및 교육시설 환경개선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1조의2(용어의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기자재”라 함은 기계, 기구, 표본, 모형, 정보화 관련 기자재 Network 설비, 비도서 녹화·녹음용 학습자료(CD 및 Video Tape, Film)등을 말한다.
2. “교육시설”이라 함은 본교 전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우리대학의 모든 기자재 및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기능)**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자재 도입, 교육시설 환경개선의 필요성 및 타당성
2. 타학과 보유기자재의 전용·공동사용 가능여부
3. 국산품으로 대체구입 가능여부
4. 기자재 및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운용예산, 관련기술 자문
5. 고장 시 수리대체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6. 기자재의 생산국, 규격, 성능, 등의 적합성 여부
7. 기자재 도입에 따른 설치 공간 및 부대시설 확보여부
8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9. 기자재 및 교육시설 환경개선 예산 집행 계획

②삭제 <2025.10.01.>

**제4조(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된다.

1. 당연직 : 총장, 교학부총장, 대외부총장, 행정부서장, 총학생회회장으로 하며, 간사는 주무팀장으로 한다.<개정 2025.10.01.>
2. 위촉직 : 관련분야의 전공교수 중에서 기자재 및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 전문위원 4인 이내로 한다.

②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구매(교육시설)정보에 관한 전문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
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서기와 실무를 담당할 담당직원 1인을 배석시킬 수 있다.

**제5조(임기)**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.

③서기는 구매담당자로 하고, 구매담당자는 간사를 보조한다.

**제7조(회의)**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(또는 전화통보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(서면결의)**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**제9조(관계부서의 협조)** 위원회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제반 필요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0조(사무관장)** 위원회의 사무는 사무처에서 한다.

**제11조(운영세칙)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부 칙**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03. 06. 27 개정)**

①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구성원조직(2007. 08 . . 삭제개정)

[별표 제1호 서식(2007. 08. . 개정)]

( 직 인 생 략 )  
업 무 연 락

수 신 : 교육시설및기자재심의위원 귀하 발송일자: . . .

제 목 : 2000학년도 실험실습기자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

1. 관련 : 기자재심위원회규정 제7조

2.( )학년도 실험실습기자재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.

해당하시는 심위위원, 학과장 및 담당교수님은 아래 심의일정을 참조 요구안에 대한 구매목적 및 현실성, 타당성, 사용계획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일 시 :    년 월 일 시 ~    년 월 일 시

나. 장 소 : 총장실

다. 참석대상

일 자	계 열	학과명	참석대상자	해당시간	비 고

대전보건대학교 교육시설및기자재심위위원장

수신자 :

(규격 : 전산용지(A4))